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가단515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11.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1. 1. 12. 접수 제15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19. '15,892,787원 및 그중 13,832,674원에 대하여 2003.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5336).

나. 망 D이 2020. 11. 5. 사망하자,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1. 1. 12.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A은 2021. 2.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21. 3. 15.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1. 5. 7.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2021. 8. 10. A의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1개회505602).

마. A의 소송수계신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각 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당시에 계속된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당시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적법한 수계 적격이 있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것처럼 A이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음에도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호

별 지 목 록

1. 전라북도 익산시 대 195 m'

2. 전라북도 익산시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시멘벽돌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59.5 m'

